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658호 2018. 8. 14.(화)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8-99호 도로명주소 고시 3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8-986호 등기해태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5

거창군 공고 제2018-990호 「거창군 용역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

이 년									
--------	--	--	--	--	--	--	--	--	--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940-3043, 행정 3043)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8. 14.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오무2길 6 등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실(☎055-940-3311~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산93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고제로 740-164	2009-12-28	2018-08-14	행정구역 고제면을 지나가는 도로라 하여 고제로라 명명	
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216-4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김천3길 25-7	2009-04-01	2018-08-14	웅곡에서 내려오는 개울물에 녹물이 내려오므로 붙여진 행정리명이 반영된 세번째 도로	
3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1704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소룡길 23-76	2009-04-01	2018-08-14	마을 뒤에 소룡산이 있어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4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내오리 153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오무2길 6	2009-12-28	2018-08-14	15세기 말 연산조 사화 뒤 김포에서 옮겨온 김일동이 고향 청도의 옛이름자를 넣어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두번째 도로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예고 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미수령(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8. 10.

거 창 군 수

- **공고제목** :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8. 8. 13. ~ 8. 28.(15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 **공고내용**

1. 처분의 제목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			
2. 당사자	이름	채*범	생년월일	49. 12. 29.	
	주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동동4길 11, ***동 ***호(주공아파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97 외 1필지 주공1차아파트 107동 309호 거래에 대하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 2조를 위반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부과			
5. 법적근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1조			
6. 기타(문의처)	제출 처	기관명	거창군청	부서명	민원봉사실
		주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연락처	055-940-3313	FAX	055-940-3288

※ 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2018. 8. 28.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거창군 용역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용역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용역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2. 일부개정이유

대통령령인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에 공개하는 규정을 반영하여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15조)

4.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8. 8. 10. ~ 2018. 8. 30.(20일간)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주 소 :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담당부서 : 거창군청 기획감사실
- 전 화 : 055-940-3054
- 팩 스 : 055-940-3029

라.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940-30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용역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018-
----------	-------

제출일자	2018. 8. .
제 출 자	기획감사실장

1. 제안 이유

2019년(2018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대상 법령인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는 규정을 반영하여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가.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15조)
- 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조문 순서 정비함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과 단어를 순화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8. 8. 10. ~ 30.
 - (나) 예고결과 :
 - (4) 성별영향분석 : 분석결과반영 여부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거창군 용역관리 및 운영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이 시행하는 <u>각종 용역의 사전심의로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용역"이라 함은 <u>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u></p> <p>2. "학술용역"이라 함은 <u>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 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u></p> <p>3.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u>도로, 하천, 상·하수도, 관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u></p> <p>4. "공사설계용역"이라 함은 <u>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 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u></p> <p>5. "사업집행용역"이라 함은 <u>도시계획사업의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사업 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u></p> <p>6. "평가안전진단시험 등 용역"이라 함은 <u>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그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 보급, 정밀 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 등의 용역을 말한다.</u></p> <p>제3조(위원회 설치) ① 용역의 타당성</p>	<p>거창군 용역 관리·운영 조례</p> <p>제1조(목적) ----- <u>----용역을 사전에 심의하여 그 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u>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용역”이란 <u>효율적인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업무를 말한다.</u></p> <p>(제2호, 제5호, 제6호는 제4조 위원회 심의대상에만 나오는 용어이므로 그 조항에 그대로 규정함. 제3호·제4호는 이 조례에 한번도 나오지 않는 용어로 삭제함)</p> <p>제3조(용역심의위원회 설치·기능) ①</p>

과 효율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용역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기업지원과장, 재무과장, 건설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1명,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종사자 4명 이상을 군수가 위촉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각 개별 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이 따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용역 사업비의 적정성 및 용역기간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3. 용역 과업 지시서 내용의 적정성과 적합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심의대상) 용역심의 대상은 제2조에 따른 용역 중 용역예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 및 평가안전진단 시험 등 용역과 사업집행 용역으로 하되, 평가·자문·지도 및 사업관리 업무는 1건당 예정금액이 1천만원 이상의 용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 심의로 대체한다.

1. 매년 상시 반복적인 용역 및 투융자 심사를 이미 받은 사업

용역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각 개별 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을 따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용역 사업비의 적정성과 용역기간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3. 용역 과업 지시서 내용의 적정성과 적합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기업지원과장, 재무과장, 건설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종사자 4명 이상

제4조(위원회 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천만원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용역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 사업을 위한 용역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그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 보급, 정밀 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 등의 용역.다. 도시계획사업의 확정 시행에 따른 지적고시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

<p>2. 국고 및 도비 보조 용역</p> <p>3.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p> <p>4.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또는 시급한 발주가 필요한 용역으로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p> <p><u>제4조(위원회 임기) ①</u>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② <u>군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u></p> <p>③ <u>위촉위원이 결원이 될 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u>제5조(위원의 해촉)</u>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p> <p>2.~4. (생략)</p>	<p><u>사업 집행에 따른 용역</u></p> <p>2. 1천만원 이상인 평가·자문·지도·사업관리 용역</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p> <p>1.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p> <p>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p> <p>3.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투자 심사를 받은 사업</p> <p>4.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인 용역</p> <p>5. 국비·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p> <p>6.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용역</p> <p><u>제6조(위원회 임기) ①</u>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삭제></p> <p>당연한 것이므로 규정실익없음</p> <p>② <u>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u>----- ----- -----</p> <p><u>제7조(위원의 해촉)</u> ----- ----- ----- -----</p> <p>1. <u>질병 등으로 인하여</u>----- ----- -----</p> <p>2.~4. (현행과 같음)</p>
--	--

<p><u>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u>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③ (생략) 제9조(회의) ①~④ (생략)</p> <p><u>제10조(제척·회피)</u> ① (생략) <u><신설></u></p>	<p><u>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u>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u>제10조(회의)</u> ①~④ (현행 제9조와 같음) <u>제8조(제척·기피·회피)</u> ① (현행과 같음)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 ----- ----- -----</p>
<p>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 할 수 있다</p>	<p>③ ----- ----- ----- -----</p>
<p><u>제11조(심의요청 등)</u>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용역과제 심의 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에는 제안 이유,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및 용역기간 등 당해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p>	<p><u>제11조(심의요청 등)</u>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관업무 부서장”이라 한다)----- ----- ② ----- ----- -----용역 방법·기간 등 해당----- -----모든----- ----- ③ ----- 경우-----</p>
<p><u>제13조(결과조치 등)</u> 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p>	<p><u>제13조(결과조치 등)</u>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결과를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4항 회의록규정 있어 삭제) ② (현행과 같음)</p>
<p><u>제14조(용역결과 관리)</u> 소관업무 부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기획감사실장에게</p>	<p><u>제14조(용역결과 관리)</u> ----- ----- -----</p>

제출하고, 기획감사실장은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시책개발과 사업추진-----

제15조(용역결과 공개) 소관업무 부서장은 용역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거창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거창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지급하면되므로 조례에 규정할 실익없음

제16조(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 업무에 참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비밀엄수) -----
-----위원,-----
-----알게 된-----
